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 7호

『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-17호)』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03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시범사업('11~'13) 추진중 상인회,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, 타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
- 사업추진실적 보고업무 과다, 정산절차 불명확 등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관련근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의7

3. 주요내용

- 탄력적이고 적시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세부시행계획 절차를 도입하여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
- 사업개시 직후부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
- 「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상권관리기구 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청장에서 지방청장으로 위임
- 상권활성화사업이 국비지원사업 임을 감안 지방청 소관과장은 국비 지원기간중 상권관리기구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

- 상권관리기구의 독립성 확보의 일환으로 타운매니저에게 30만원 내지 50만원의 사업비 집행 전결권을 부여
- 지방중기청 역할 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규모가 총사업비의 20%를 초과하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
- 사업 진도점점 주체를 현행 청장에서 지방 실정에 밝은 지방청장으로 변경
- 현행 지침상 불명확한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기, 사업비 정산 주체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
-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정, 기관명칭 변경 등을 반영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『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(☎ 042-481-4563)

* e-mail : btkang@smba.go.kr

4. 기타사항 :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간담회, 워크숍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